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36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4.

발 의 자:이성만・김교흥・김홍걸

송옥주 · 위성곤 · 윤준병

이형석 · 정일영 · 한정애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. 재 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, 재난으 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 정임.

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, 상가 건축물과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에, 재난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과 제 도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재난 피해자의 "온전한 일상 회복"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이념으로 추가하고, "실질적인 피해복구"계획 수립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로 추가함(안 제2조 및 제4조제4항 신설).

- 나. 재난 발생의 우려 또는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(안 제40조제1항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지원하고, 재난 피해 원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).
- 라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외에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, 공동 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과 시설 복구비 지원 대상이 되는 '주 생계수단 피해'에 상업을 추가하고,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포함함(안 제66조제3항).
- 마.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함(안 제66조의 2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것이"를 "것은 물론, 그 피해에 대해 일상으로 회복 가능한 온전한 보상을 하는 것이"로 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0조제1항 전단 중 "명할 수 있다"를 "명해야 한다"로 한다.

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있다"를 "있으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"를 "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건축물"을 "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생계안정"을 "일상회복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농업"을 "상업·농업"으

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그에 따른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 7의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제66조의2제1항 중 "지급할 수 있다"를 "지급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복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복구비 산정 중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재난을	제2조(기본이념)
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	
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<u>것이</u> 국	<u>것은 물</u>
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	론, 그 피해에 대해 일상으로
의무임을 확인하고, 모든 국민	회복 가능한 온전한 보상을 하
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국민	는 것이
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	
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	
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	
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	
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	
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	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
	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
	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
	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
	<u>다.</u>
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·군수·	제40조(대피명령) ①

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 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 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·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·관 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 킬 것을 <u>명할 수 있다</u>.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 다.

### ② (생략)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 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

<u>명해야 한다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 세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
할 수 <u>있다</u>. 다만, 제39조제1항 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1.·2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<u>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</u> <u>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</u>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

<u>있으며 국가나 지방</u>
자치단체가 피해의 발생이나
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
피해주민과 피해기업에 발생한
재산상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
를 지원할 수 있다
·.
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
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
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
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
<u>다</u>

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1. (생략)
- 2. 주거용 <u>건축물</u>의 복구비 지원

<신 설>

- 3.·4. (생략)
- 5. 세입자 보조 등 <u>생계안정</u> 지 원
- 6. (생략)
- 7. 주 생계수단인 <u>농업·</u>어업·임 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 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 의 복구를 위한 지원

<신 설>

•
1. (현행과 같음)
2건축물 및 상업용 건
<u>축물</u>
2의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
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
주택 및 그에 따른 시설 중
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
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
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
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
3.·4. (현행과 같음)
5일상회복
<u> </u>
C (청체기 기 O)
6. (현행과 같음)
7 <u>상업·농업</u>
7의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
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
고세4상에 먹는 도기를 또는
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
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

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

8.·9. (생략)

④ ~ ⑦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 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 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(이 하 "복구비등"이라 한다)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 해서는 제59조 또는 「자연재 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복 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.

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 를 위한 지원 8.·9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제66조의2(복구비 등의 선지급) 제66조의2(복구비 등의 선지급) -----지급하여 야 한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